# 한-영 FTA TBT 주요내용
및
# 향후 대응

Korea Agency for Standards and Technology

국가기술표준원
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

# 목차



1 한-영 FTA 개요

2 한-영 FTA TBT 주요내용

3 정보제공 및 영국정부와 확인 사항

4 향후 대응

# 한-영 FTA 개요

➢한-영 FTA는 **노딜 브렉시트** 상황에 대비하여 한-영 양국 간 한-EU FTA의 무역 혜택을 유지해가기 위한 것으로, 기본적으로 한-EU FTA를 계승

➢한-영 FTA 협정문은 상품, 서비스, 규범 등 총 15개의 장과 3개의 의정서 등으로 구성

※ **제1차**('17.2) ~ **제7차**('19.5), **타결 선언**('19.6), **발효**('21.1.1)

| | 한-영 FTA의 구성(총 15 장, 3 의정서) |
|---|---|
| 상품(6) | 목적 및 일반적 정의(제1장),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(제2장), 무역구제(제3장),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(제4장),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(제5장), 관세 및 무역원활화(제6장) |
| 서비스(2) | 서비스 무역 · 설립 및 전자 상거래(제7장), 지급 및 자본이동(제8장) |
| 규범(5) | 정부조달(제9장), 지식재산(제10장), 경쟁(제11장), 투명성(제12장),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(제13장) |
| 기타(2) | 분쟁해결(제14장), 제도 · 일반 및 최종규정(제15장) |
| 의정서(3) | "원산지 제품" 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,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,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|

# 한-영 FTA TBT 주요내용(1/5)

## 1. 기술규정 제 · 개정 시 의무

➢기술규정 관련 법령 등을 제·개정할 경우

- 상대국 이해당사자의 비차별적 참여를 허용하는 내국민대우 원칙규정 (제4.4조제2항)

## 2. 공동 협력

➢표준, 기술규정, 적합성평가 분야 협력강화를 위해 규제대화체(regulatory dialogue) 구성 가능(제4.3조제1항)

➢양국간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의 불필요한 차이를 줄이고 수렴(converging) 혹은 정합(aligning) 가능성을 검토(제4.3조제2항다호)

# 한-영 FTA TBT 주요내용 (2/5)

## 3. 적합성평가 및 인정(Accredition)

➢양국은 상대국에서 수행된 적합성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이 있음을 인정(제4.6조제1항)

<제도적 방안>

①상호수용에 관한 합의, ②상대국 적합성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절차(accreditation procedure), ③상대국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정부 지정(governmental designation), ④상대국 적합성평가절차결과를 인정(recognition),

⑤적합성평가기관 간의 자발적 약정, ⑥공급자적합성 선언(SDoC)의 수용

➢안정정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, 국제표준의 사용

➢국제협정을 최대한 이용하기로 약속(제4.6조제2항다호)

# 한-영 FTA TBT 주요내용 (3/5)

## 4. TBT 조정자(Coordinator) 지정

➢양국은 TBT 조정자를 지정하여 TBT 협정의 이행, 행정 사항 협의, TBT 이슈 해결 등을 위해 노력(제4.10조)

## 5. 표시 및 라벨링

➢표시 및 라벨링 규제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목적 이외에 양국 간 통상 장벽이나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보장(제4.9조)

➢복수언어의 사용

✓한글로 표시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여타 언어로 병기되거나, 표기되는 내용이 기만적 진술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여 복수언어의 사용을 허용

➢비영구적, 탈착가능 라벨 허용

✓규제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비영구적 혹은 탈착 가능 라벨을 허용 하도록 노력키로 합의

# 한-영 FTA TBT 주요내용 (4/5)

## 1. 전기전자제품 비관세조치

➢전기안전인증 대상 품목 축소

✓전기안전인증 대상 품목을 축소하기 위하여 협정 발효 후 매3년마다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양국이 이를 검토(부속서 제4조제3항)

➢공급자 적합성 선언(SDoC) 확대

✓양국은 협정 발효 3년 후, 매5년마다 SDoC 도입의 확대를 통해, 제3자 강제 시험을 포함하여 기술행정요건의 점진적 제거 가능성을 검토(부속서 제5조 제2항)

## 2. 자동차 비관세조치

➢한-영 양국은 각각의 국내기준과 유사한 UN ECE(United Nations Economic Council for Europe) 규정과 GTR(Global Technical Regulations) 규정에 따라 제작된 자동차에 대해 해당 국내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

# 한-영 FTA TBT 주요내용 (5/5)

## 3. 의약품 및 의료기기 비관세조치

- 한-영 양측의 보건의료 제도를 존중하는 가운데 의약품의료기기의 개발과 접근 촉진, 양자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한-EU FTA 수준에서 합의
- 양측 관심사항을 반영하여 한-영 보건의료 제도의 차이 존중, 혁신의 중요성,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 등 규정

## 4. 화학물질 비관세조치

- 한-영 양국간 정책 불균형 및 무역장벽 해소, 화학물질 규제 관련 통상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메커니즘 확립

# 정보제공 및 영국정부와 확인 사항(1/2)

## TBT 포털을 통하여 영국 정부의 UKCA 인증 가이던스 안내

➢ **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추진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옴**

→ **시험인증관련 정보는 KnowTBT포털을 통해서 對英수출기업에 안내**

| | |
|---|---|
| 1차 업로드 (2019.6.) | ✓ 現 영국 공인 인증기관(NB) 지위 변경 및 신규 영국 적합성 마크 제도 도입 (UK Conformity Mark : UKCA) 등에 대해 소개<br>✓ 구체적인 일정이나 북아일랜드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|
| 2차 업데이트 (2020.12) | ✓ 브렉시트 이행기간 만료('20.12.31.) 시점부터 '21.12.31.까지 기존의 CE인증을 UKCA인증으로 전환하는데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<br>✓ 2021년 1월 1일 이후 북아일랜드 시장에 출시하는 제조 상품에 대해 필요한 조치도 포함<br>✓ UKCA 및 NI 마크 사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 업데이트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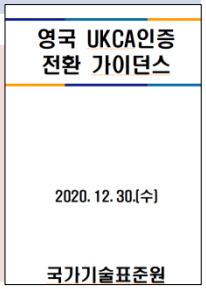


## Know TBT 포털

- http://www.knowTBT.kr
- 주요 수출국들의 시험인증 기술규제 동향 정보 제공

# 정보제공 및 영국정부와 확인 사항(2/2)

## 한-영 FTA상의 TBT 조정자로서 역할 수행

➢**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한-영 간 공식 채널로 문의하여 불확실성 해소**

시험·인증기관 의견수렴(10.15.), 국내 산업계(LG, 삼성 등) 의견조회(11.4.)]

| | |
|---|---|
| 1차 서한<br>(2020.10.20.) | • 영국내 대리인 지정은 유예기간 없이 '21.1.1.부터 적용<br>• 인증전환 절차와 관련해서는 現시험인증기관과 상의 등 |
| 2차 서한<br>(2020.11.30.) | • '22.1.1.부터는 UKCA마크가 부착된 제품만 판매 가능<br>• '21년에 영국에 출시된 CE마크부착(UKCA 미부착) 제품은 '22년도에 영국 시장에서 판매 가능?<br>• 에너지라벨링과 에코디자인 규제는 영국 가이던스 참조 |

# 향후 대응

## 1. TBT 조정자로서 역할 수행

➢ 對英수출 기업이 시험인증 애로사항을 문의

→ 국가기술표준원이 영국 정부와 협의하여 해소

(무역기술장벽협상과 : T 043-870-5543)

## 2. 1381 인증표준 정보센터 운영

➢ 해외 수출 시 시험인증 관련 궁금사항 질의(T : 1381)

## 3.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(중소벤처기업부)

➢지원내용 : 시험비, 인증비, 컨설팅비 등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(50% 또는 70%)를 성공조건부 사후지원(최대 1억원)

➢연락처 : 화학융합시험연구원( T : 02-2164-0172~8)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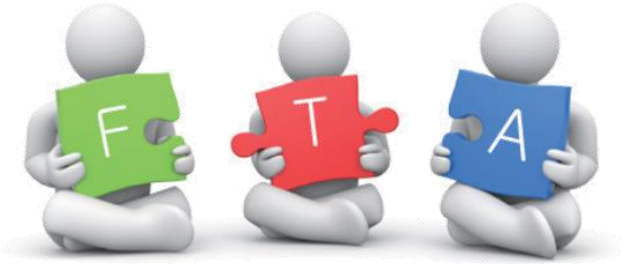
# Thank You!